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노 형 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이유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충청북도 안전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체험관의 기능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개관과 휴관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이용료, 입장 및 행위 제한, 재산·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보험가입과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체험관의 기능과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8조는 체험관의 개관과 휴관(1월1일, 명절 연휴 등) 및 이용방법, 이용료(무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체험관의 입장 제한과 체험관 이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이용자의 체험시설 등의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는 체험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과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는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문화·여가의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4. 2.~'21. 4. 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함.